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0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박균택·조인철·박지원

전진숙 · 정준호 · 맹성규

김현정 · 김태년 · 이건태

황정아 · 서영교 · 김태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선서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 선서 후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

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 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 항 및 제16조의2).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허위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위진술의 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생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u>한다.</u>	<u>한다.</u>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
	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
	<u>니다."</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2(허위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
	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
	함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1년
	<u>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u>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
	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